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 (內) (事) (件)

實用新案登錄無效

<大法院 第2部 判決>(1980. 12. 23)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 용 철

關與法官: 한 환진 · 김 기 흥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변영구(충남 공주군반포면 봉곡리 464)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이종호(부산 동래구 수정동 453)

3. 原審決: 特許廳 1980. 7. 26字, 1978年 抗告審判 당第153號 審決

4. 主文: 上告를棄却한다. 上訴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5. 理由

被審判請求人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上告理由 第2點에 대하여,

原審決이 그判示事實을 認定함에 使用한 證據中에는 公文書이므로 真正成立이 推定되는 甲第7號證, 公證된 文書이므로 真正成立이 推定되는 甲第3號證, 被審判請求인이 그署名捺印을 認定하고 있는 甲第1號證이 包含되어 있고 위 證據能力있는 書證의 各記載와 辯論의 全趣旨를 綜合하면 原審決의 實認定은 頗然히 公認되는 바이므로 거기에 論旨가 指摘하는 바와 같은 證據判斷을 그르치거나 審理未盡으로 인한 理由不備 등의 違法事由가 있다 할 수 없다.

上告理由第1點에 대하여,

記錄에 의하면 原審이 被審判請求人은 이 件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考案者가 아니라고 認定한措

置는 正當하다고 公認되고 被審判請求人은 原審에서 이 件 實用新案의 真正한 考案者로부터 承繼받은 者라고 主張한 혼적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그에 대한 立證도 없는 바이므로 原審이 이 件 登錄考案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者가 考案者로서 出願하여 登錄된 것으로서 實用新案法 第2條, 同第19條 第1項 第1號에 의하여 그 登錄이 無效임을 難할 수 없다고 判斷한 措處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 할수 없다. 論旨는 모두 理由없다. 이에 上告를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故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参考—

抗告審判

1978年 抗告審判(당) 第153號

抗告審判請求人: 이 종 호

被抗告審判請求人: 변 영 구

위當事者間의 1977年 審判 第167號(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의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審決

1977年 審判 第167號

審判請求人: 변 영 구

被審判請求人: 이 종 호

위當事者間의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의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 登錄 第12749號 實用新案은 그 登錄을 無效로 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